

# 영업비밀 보호센터

Trade Secret Protection Center



## 목 차

- 01 | 영업비밀 보호제도
- 02 | 영업비밀보호센터 소개
- 03 |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
- 04 |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
- 05 |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
- 06 | 영업비밀 관리시스템
- 07 |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
- 08 | 영업비밀 보호 교육
- 09 | 온·오프라인 상담
- 10 | 영업비밀 보호 유관기관 현황

## 01 영업비밀 보호제도

### 1 영업비밀이란

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,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



### 2 영업비밀의 유형

기술상의 영업비밀	경영상의 영업비밀
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 및 제품 설계도</li> <li>• 기계설비 및 장비</li> <li>• 물건의 생산 및 제조방법</li> <li>• 물질의 배합방법</li> <li>• 연구개발 보고서 및 실험 데이터</li> </ul>	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</li> <li>• 경영전략 등 주요계획</li> <li>• 고객명부</li> <li>• 사업제안서</li> <li>• 매뉴얼 등 중요 자료</li> </ul>

###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법적 구제수단

구분	민사	형사
침해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정취득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절취, 기망, 협박,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·공개하는 행위</li> <li>-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·중과실로 취득·사용·공개하는 행위</li> <li>- 선의취득 후 악의·중과실로 사용·공개하는 행위</li> </ul> </li> <li>•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·공개하는 행위</li> <li>-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·중과실로 취득·사용·공개하는 행위</li> <li>- 선의취득 후 악의·중과실로 사용·공개하는 행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정한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업비밀을 취득, 사용, 누설하는 행위</li> <li>-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</li> <li>- 삭제반환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</li> </ul> </li> <li>• 부정한 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절취·기망·협박,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</li> </ul> </li> <li>• 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, 사용하는 행위</li> </ul>
구제 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지 및 예방 청구</li> <li>• 폐기 또는 제거 청구</li> <li>• 손해배상 청구</li> <li>• 신용회복조치 청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국내유출)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</li> <li>• (국외유출)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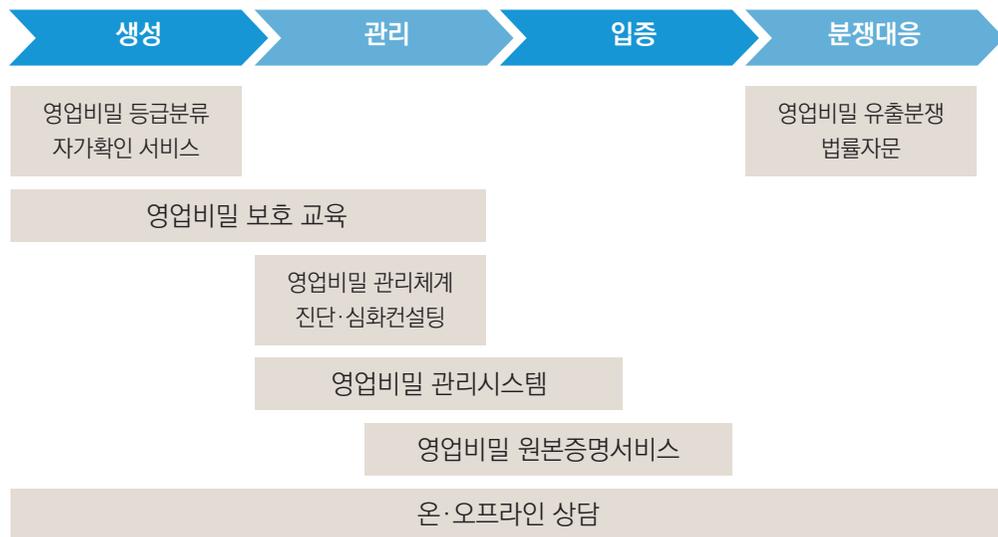
## 영업비밀보호센터 소개

### 1 영업비밀보호센터

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(특허청공고 제2016-6호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)

### 2 영업비밀 보호단계별 지원사업



##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

- 1 사업개요**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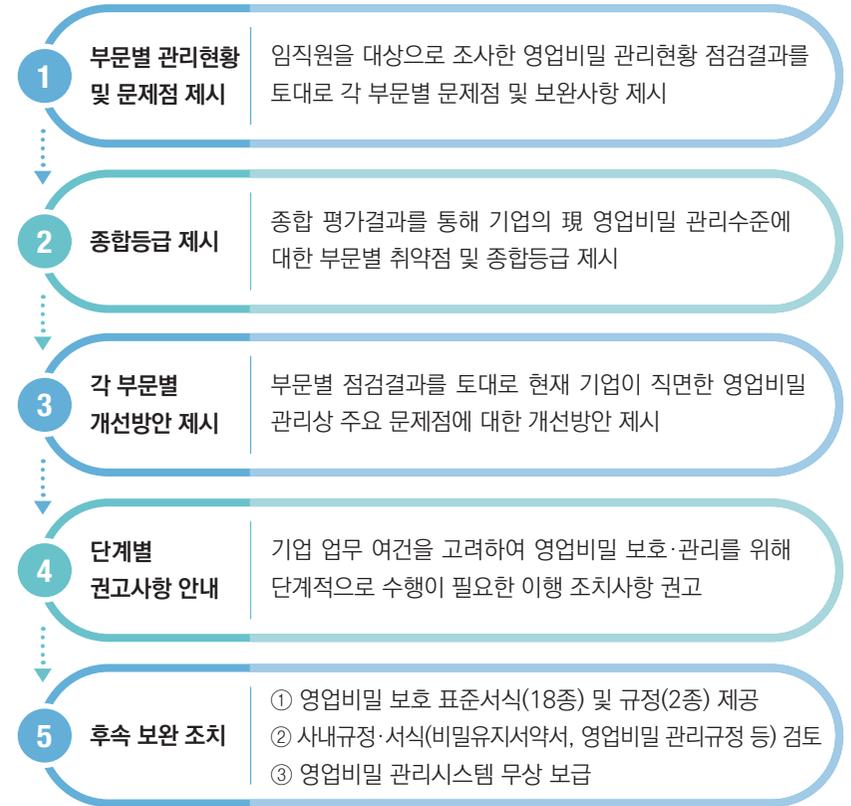
지원대상

중소기업\*, 대학, 공공기관  
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기간

모집공고 후  
예산 소진 시까지

### 2 컨설팅 내용



### 3 지원절차



### 4 신청방법 (택1)

- 온라인 신청 |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(www.tradesecret.or.kr) 내 '신청 접수 창구'에서 온라인 신청
- 이메일 신청 |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대표이메일 (tsep\_help@koipa.re.kr)로 제출

##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

### 1 사업개요

기업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 지원

지원대상

중소기업 및 중견기업\*, 대학, 공공기관  
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
신청기간

모집공고  
기간 내

### 2 컨설팅 내용

-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기준으로 사전 설문에 의한 現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, 현장실사 및 보안체계 점검
- 영업비밀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여 비밀등급 분류, 서식·규정 검토, 비밀자료 분리·보관 등 업무상 관리체계 개선 지원
- 임직원 교육 및 선포식 등 사내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지원

#### 부문별 컨설팅 세부내용

제도적 관리	인적 관리	물적 관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</li> <li>• 비밀등급 분류 지원·감수</li> <li>•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밀준수의무 부과</li> <li>•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</li> <li>• 내/외부자 서약서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</li> <li>• 비밀자료 분리 보관·통제</li> <li>• 사외 반출절차 관리</li> </ul>

### 3 정부지원 비율

구분	소기업	중기업	중견기업
정부지원 비율	100%	75%	60%
기업부담 비율	-	25%	40%

### 4 지원절차



### 5 신청방법 (택1)

- **온라인 신청** |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(www.tradesecret.or.kr) 내 '신청 접수 창구'에서 온라인 신청
- **이메일 신청** |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대표이메일 (tsep\_help@koipa.re.kr)로 제출

##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

### 1 사업개요

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

※ 최초 1회 법률자문 지원

지원대상

중소기업\*, 대학, 공공기관,  
예비창업자(개인) 등  
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기간

모집공고 후  
예산 소진 시까지

### 2 지원내용

- 당해 사건의 법적 구제 가능성
- 법적쟁점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한 관계법령 안내
- 민·형사 법적대응에 필요한 자료목록 제시
- 영업비밀 소송진행 시 예상 소요 비용 제시

### 3 지원절차



### 4 신청방법 (택1)

- **온라인 신청** |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(www.tradesecret.or.kr) 내 '신청 접수 창구'에서 온라인 신청
- **이메일 신청** |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대표이메일 (tsep\_help@koipa.re.kr)로 제출

## 영업비밀 관리시스템

**1 사업개요** 사내 영업비밀을 등록·보관하고 이용 가능자와 이용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

**지원대상** 중소기업\*, 대학, 공공기관  
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**신청기간** 상시

**2 지원기능**

- 비밀문서 관리** | 영업비밀 자료 등록·수정·반출 기능 (원본증명서비스 연계)
- 접근권한 관리** | 이용자별 권한 설정 및 이용그룹 구성, 사내 책임자 지정
- 인력 관리** | 이용자·관리자 등록, 책임자 지정, 서약서 징구 및 관리
- 이력·통계관리** | 이용자별 영업비밀 자료 취급이력 조회, 등록·열람·수정·반출 통계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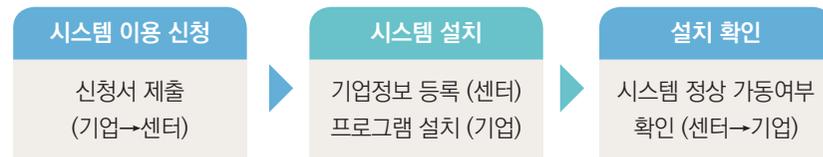
**3 특징점**

- **비용 절감** | 서버, 상용S/W 구입 등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 無
- **비밀관리성 입증** | 영업비밀 자료 유출 시 관련 사실 증빙을 위한 증거 확보
- **임직원 인식 제고** | 자사 영업비밀에 대한 잠재적 유출심리 억제

**4 이용요금**

<b>영업비밀 보호센터</b>	이용실적 有 기업	무상
<b>지원사업</b>	이용실적 無 기업	가입비 10만원 ※ 원본증명서비스 이용포인트(10만포인트)로 환급

**5 지원절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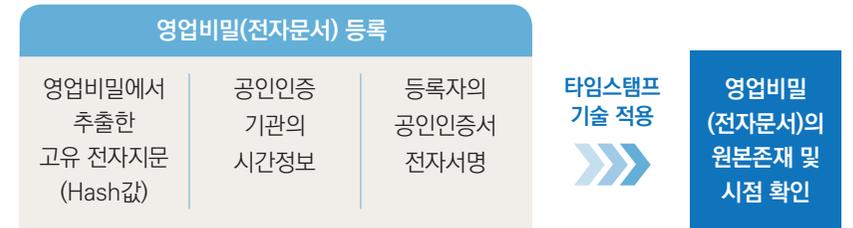


**6 신청방법 (택1)**

- **온라인 신청** |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(www.tradesecret.or.kr) 내 '신청 접수 창구'에서 온라인 신청
- **이메일 신청** |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대표이메일 (tsep\_help@koipa.re.kr)로 제출

##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

**1 사업개요** 기업의 영업비밀(전자문서) 원본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 분쟁 발생 시 "내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"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



※ 서비스의 법적 근거 :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
 ※ 기관의 법적 근거 :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

**2 특징점**

- **보유사실 및 시점 추정** |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면 등록 당시 해당 전자문서 내 기재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
- **원본 사외 반출 없이 이용** | 이용자 PC에서 직접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므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원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

**3 이용방법**



※ 한글, MS워드 등 사무용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,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 등록 지원

**4 이용요금**

	구분	요금	비고
원본등록	신규등록	10,000원/건, 1년	신규 원본등록 시
	유지등록	3,000원/건, 1년	유지기간 내 갱신 시
	할증유지등록	9,000원/건, 1년	유지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시
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		30,000원/건	법원 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 시 (방문 최소 1일 전 문의)

**4 서비스 가입**

-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(www.tradesecret.or.kr)

## 영업비밀 보호 교육

### 1 사업개요

영업비밀 보호 인식과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관련 교육 제공

**지원대상** 중소기업\*, 대학, 공공기관, 개인  
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**신청기간** 모집공고  
기간 내

### 2 지원내용

#### 정기교육

영업비밀 관리 인력을 위한  
심화 집체교육  
**교육시간** | 14시간(무박 2일)  
**교육일정** | 상반기(5월)  
하반기(11월)

#### 지역 설명회

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를  
위한 설명회  
**설명회시간** | 3~ 4시간  
**설명회일정** | 분기당 1회  
※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개설 대상 지역 선정

### 3 신청방법

- 웹사이트 신청(www.tradesecret.or.kr)

## 온·오프라인 상담



법률 상담

- 영업비밀 개념 및 종류, 영업비밀 관련 법규
- 영업비밀 침해유형, 영업비밀 사전 보호방안
- 영업비밀 침해 구제 방안(민사적, 형사적)
-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



관리방안  
상담

- 영업비밀 관리계획, 제도적 관리방안
- 인적 관리방안, 물리적 관리방안
- 관리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
-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및 관리시스템

☎ 대표전화 1666-0521 ✉ 이메일 tsep\_help@koipa.re.kr 📍 방문상담 사전연락 필수

## 영업비밀 보호 유관기관 현황

기관명	주요 정책 및 지원 서비스	연락처 및 홈페이지
특허청	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	1544-8080 www.kipo.go.kr
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	특허·영업비밀·디자인·상표·부정 경쟁행위(형태모방) 침해사건 수사	042-481-5812 / 8324 www.patent.go.kr:7078
산업통상자원부	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	1577-0900 www.motie.go.kr
중소벤처기업부	중소기업지원 정책	1357 www.mss.go.kr
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	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문 수사 및 예방, 기업지원활동	1566-0112 www.police.go.kr
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	국내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산업보안활동을 수행	111 http://www.nis.go.kr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	02-3489-7000 www.kaits.or.kr
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·신고센터	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 기능 수행	02-368-8787 www.ultari.go.kr
공정거래위원회	독점 및 불공정거래 방지정책 수립 운영	044-200-4010 www.ftc.go.kr
무역위원회	불공정한 무역거래행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지원	044-203-5837 www.ktc.go.kr
동반성장위원회	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	02-368-8400 www.winwingrowth.or.kr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	기술자료 임치 및 입증 서비스 운영	02-368-8484 www.kescrow.or.kr
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보호나라	인터넷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체계 운영	118 www.krcert.or.kr
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	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지원	02-550-9500 www.opa.or.kr

# 영업비밀 보호센터

Trade Secret Protection Center